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국민의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보다나은 정부
담당부서	건축안전팀	배포일시	2019. 7. 29.(월) 총 5매(본문5)	
	건축정책과	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팀장 홍성준, 사무관 김부병, 주무관 이창욱</li> <li>· ☎ (044) 201-4988, 4992</li> <li>· 과장 남영우, 사무관 성원규, 주무관 정인원</li> <li>· ☎ (044) 201-3760, 3757</li> </ul>	
보도일시		2019년 7월 30일(화)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7.30.(화) 11:00 이후 보도 가능		

## 학교·병원 등 어린이, 노인, 환자가 사용하는 피난약자 건축물에는 가연성 외장재 사용 못한다 -건축물 화재안전 강화 '건축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7.30)-

- ◆ 가연성 외장재 사용금지 확대 : 6층 이상 → 3층 이상, 피난약자 이용 건축물 등
- ◆ 층간 방화구획 전면 확대 : 3층 이상인 층과 지하층 → 모든 층
- ◆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상향 조정 : 시가표준액 3/100 → 시가표준액 10/1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9년 7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구분	지금은	앞으로는
사례 1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 A씨는 자녀가 입학할 예정인 초등학교 공사 현장에서 불이 잘 붙는 스티로폼이 시공되고 있는 것을 보고, 걱정이 크다.	어린이, 노인, 환자 등 피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축물의 외벽에는 불이 잘 붙는 스티로폼을 사용하면 안 된다.
사례 2	2층에 살고 있는 B씨는 1층 음식점에서 발생한 화재가 B씨의 방까지 금방 확산되어 창문을 통하여 겨우 탈출하였다.	매 층 방화문 등이 설치되어 1층에서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소방관이 도착할 때까지 화재가 2층으로 확산되지 않는다.
사례 3	방화문을 철거하는 등 불법 용도 변경을 한 D씨는 구청으로부터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으나, 이를 납부하더라도 불법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이득이어서 위법을 시정하지 않고 있다	위법한 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이 최대 3.3배 상향됨에 따라 건축법령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이 보다 신속히 이루어질 전망이다.

□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가연성 외부 마감재료 사용금지 확대(시행령 제61조)

-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마감재료<sup>\*</sup>를 통한 화재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스티로폼 등 불에 취약한 자재의 사용을 제한한다.

\* 단열재, 도장 등 코팅재료 등 외벽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모든 재료

ㄱ. 먼저, 건축물의 높이가 6층 이상(또는 22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화재에 강한 외부 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높이가 3층 이상(또는 9m 이상)인 건축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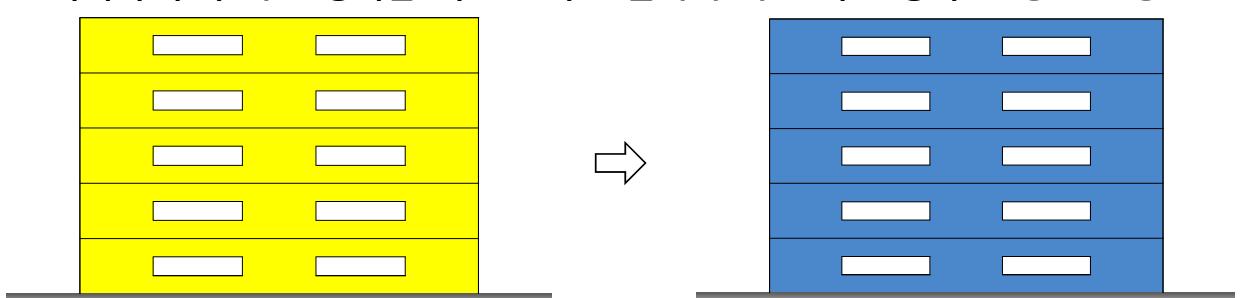
ㄴ. 또한, 피난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거동이 불편한 노인, 환자 등이 주로 이용하는 학교, 병원 등 피난약자 건축물<sup>\*</sup>은 건축물의 높이와 상관없이 불에 취약한 외부 마감재료의 사용을 전면 제한한다.

\* 건축법 시행령상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현 행)

(개 선)

■ 화재의 수직 확산 방지를 위한 건축물 높이에 따른 기준 강화 : 6층 → 3층



■ 피난약자 이용 건축물은 층수와 무관하게 기준 적용 (예시 : 2층 병원)

◇◇ 병원

◇◇ 병원

※   가연성 외장재     난연 이상 외장재     준불연 이상 외장재

\* 불연재료 : 20분 이상 불에 타지 않음, 준불연재료 : 10분 이상 불에 타지 않음,

난연재료 : 5분 이상 불이 타지 않음

## ② 필로티 주차장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강화 확대(시행령 제61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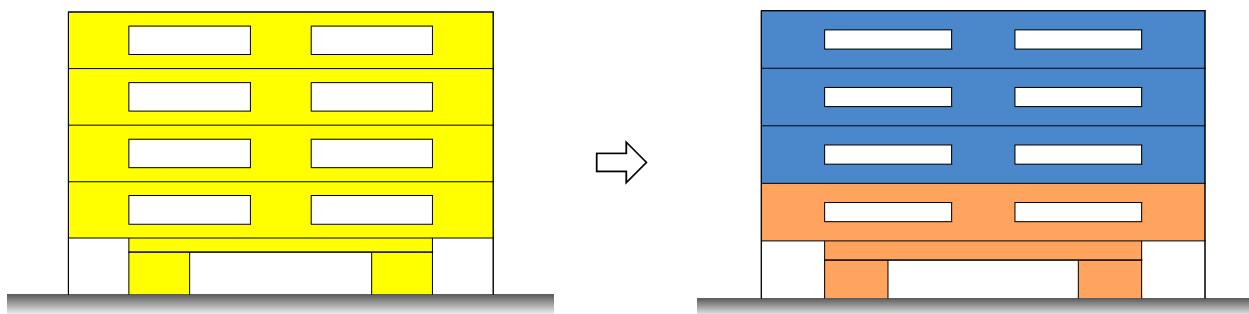
- 필로티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화재가 건축물 내·외부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재에 강한 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필로티 주차장은 건축물 내부와 방화구획하도록 하였다.

- 먼저, 필로티 주차장이 설치된 모든 건축물은 필로티 주차장의 외벽과 상부 1개층을 화재안전성이 강한 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하여, 필로티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건축물 외벽을 통해 상부층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 또한, 필로티 주차장과 연결되는 건축물 내부 출입문은 방화문을 설치하도록 하여 필로티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건축물 내부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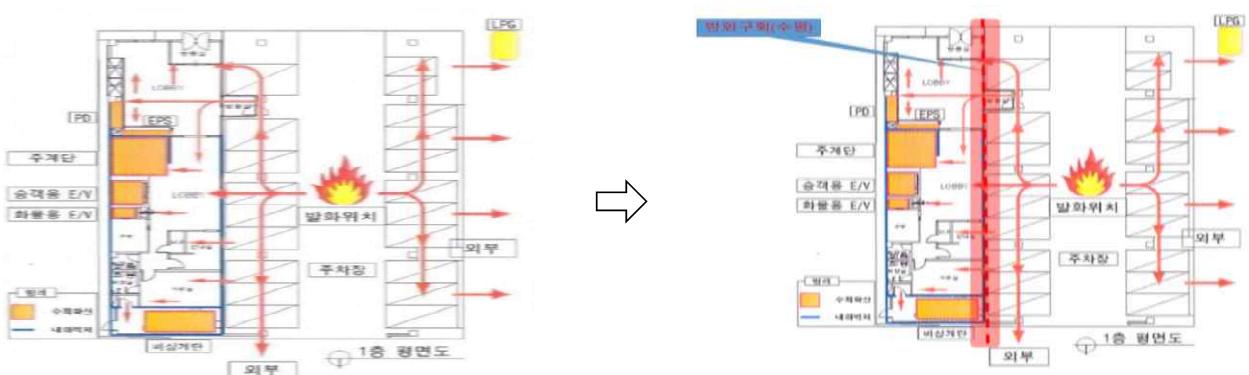
(현 행)

(개 선)

- 모든 필로티 주차장은 화재에 강한 외부 마감재료를 사용



- 필로티 주차장은 건축물 내부와 방화구획하도록 함



※ ■ 가연성 외장재 ■ 난연 이상 외장재 ■ 준불연 이상 외장재

### ③ 층간 방화구획 기준을 전 층으로 확대(시행령 제46조)

- 건축물 내부에서 발생한 화재가 건축물 내 다른 층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3층 이상인 층과 지하층에만 적용되고 있는 층간 방화구획 기준도 전면 확대된다.
- 이와 같이 층간 방화구획을 하여야 하는 층이 건축물의 모든 층으로 확대됨에 따라 앞으로는 방화문을 매 층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 다만, 건축물의 1층과 2층이 식당 등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면서 건축물의 다른 부분으로 화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구획된 경우에는 층간 방화구획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였다.

#### (예시) 층간 방화구획 기준을 전층으로 확대

■ 원 칙 : 방화구획 적용



■ 예 외 : 다른 부분과 구획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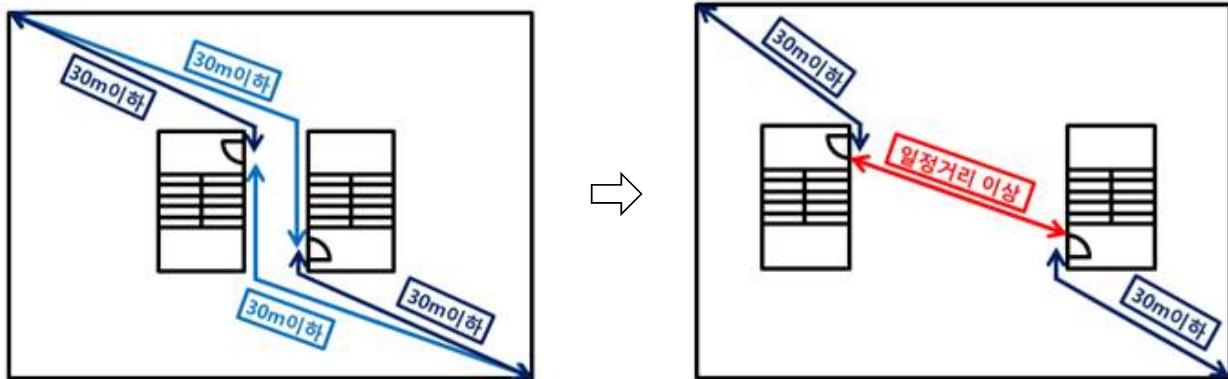


### ④ 건축물의 계단 설치 관련 기준 개선(시행령 제34조)

- 계단이 건축물 중심부에 설치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단의 설치와 관련된 기준이 개선된다.
  - ㄱ. 먼저, 2개의 계단은 건축물 평면 전체의 최대 대각선 거리의  $1/2$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하도록 하였다.
  - ㄴ. 또한, 건축물에 설치되는 계단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거실로부터 30m 이내에 설치하면 되도록 하였다.

(현 행)

(개 선)



- ※ ←→ 가장 가까운 계단까지의 거리 ←→ 2번째로 가까운 계단까지의 거리  
     ←→ 계단 간 이격하여야 하는 거리(건축물 대각선 길이의 1/2 이상)

##### ⑤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상향 조정(시행령 [별표 15] 개정)

- 건축물 화재 및 내진 기준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재보다 최대 3.3배 상향된 수준의 이행강제금(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을 부과하도록 개선하였다.
- 이행강제금의 수준이 낮아 위법 시정의 실효성이 부족하였다는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 ※ 이행강제금 부과 예시

0 건축물 개요 : 00시 3층 건축물(연면적 484㎡, 근린생활시설)

-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 358백만원
- 위법 유형 : 무단 용도변경으로 인한 방화문 훼손

0 이행강제금

- 현재 : 10.7백만원(시가표준액 × 3/100)
- 개선 : 35.8백만원(시가표준액 × 10/100)

-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은 관보게재 절차 등을 거쳐 8월 6일 공포될 계획이며, 공포 후 3개월 이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건축안전팀 김부병 사무관(☎ 044-201-498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